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확보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한덕수 (교육부 등 10개 부처 소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7조, 제38조 및 제40조)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협의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보고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등으로 전환함.

4. 주요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법령별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1. 의결주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확보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법령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고, 지방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대한 국가 관여를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 41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치입법권 강화(안 제2조, 제5조, 제11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및 제41조)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없음에도 법령에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대폭 위임하고, 법령상 일률적 기준을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로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도록 하며, 법령상 근거가 없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추진 정책의 근거를 법령에 마련함.

나. 지방자율성 확보(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

대통령령 제 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확보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1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제1항 중 “보고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2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3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59조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보고서”를 각각 “결과”로 한다.

제86조제4항 중 “보고하여야 한다”를 “알려야 한다”로 한다.

제3조(「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의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

야 한다”로 한다.

제4조(「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고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5조(「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그 밖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6조(「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 중 “보고해야”를 “통보해야”로, “보고한”을 “통보한”으로 한다.

제65조제3항 중 “보고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7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의 개정)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보고”를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고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8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의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고하여야”를 각각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보고받은”을 “통보받은”으로, “보고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9조(「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보고하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제10조(「기초연금법 시행령」의 개정)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전단 중 “보고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25조제1항제4호 중 “보고”를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기록·관리·보고”를 “기록·관리·통보”로 한다.

제11조(「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도지사는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으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법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시·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도로법 시행령」의 개정)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고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50조제5항 중 “보고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3조(「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보고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4조(「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의 개정)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보고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5조(「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고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6조(「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자료를 갖추어 그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자료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로 한다.

제17조(「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단서 중 “조례가 10퍼센트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31조 중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사업비를 말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사업비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8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해당 박물관·미술관이 소재한 지역의 문화·예술계 인사”를 “문화·예술계 인사”로 한다.

제19조(「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퍼센트”를 “60퍼센트”로 한다.

제20조(「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 중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한다.

제21조(「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의 개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소관별 추진 계획의 집행 실적 보고)”를“(소관별 추진 계획의 집행 실적 제출)”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보고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2조(「수도법 시행령」의 개정)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 제목“(수질기준의 강화 등 조례의 보고)”를“(수질기준의 강화 등 조례의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보고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23조(「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보고하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제24조(「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의 개정)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 제출받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제4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받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받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제4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받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보고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28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9조(「온천법 시행령」의 개정)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6호 중 “건당 7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수질검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건당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성분검사에 드는 원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0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보고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고하여야”를 “통보해야”로, “종합보고를 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31조(「인공조명에 의한 빔공해 방지법 시행령」의 개정) 인공조명에 의한 빔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그 밖에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32조(「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보고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33조(「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개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 제목“(보고등)”을“(통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고하여야”를 각각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를 “제2항에 따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로 한다.

제34조(「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채권과 이에 관한 연체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으로서 당초의 이행기(당초의 이행기 후에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최초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도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고 이행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35조(「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그 밖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것

제36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로 한다.

제37조(「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보고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38조(「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관할지역중”을 “관할지역 중”으로, “보고하여야”를 “제출

해야”로 한다.

제39조(「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해당 폐교재산평가가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를 “해당 폐교재산평가가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도 교육감은 대부분 받은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연간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0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중 “보고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41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5항 중 “100만원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7조(관리주체 등에 대한 감독)	제97조(관리주체 등에 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주체 등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 때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u>보고하여야</u> 한다.	① ----- ----- ----- ----- ----- ----- <u>통보해야</u>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3(교환차금의 납부) ①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환차금을 납부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꺼번에 교환차금의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의3(교환차금의 납부) ①		
1. 2. (생략)				
3. 한꺼번에 교환차금의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1.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①		

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의 매각 대금을 한꺼번에 전액(全額)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경우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2. (생략)	
3. <u>한꺼번에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u>	1.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9조(정기제물조사) ① · ② (생략)	제59조(정기제물조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제물조사를 한 후 그 <u>보고서</u>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③ ----- 결과-----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①·② (생략)	제29조(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u>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③----- ----- ----- <u>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u>

한다.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기제물조사 <u>보고서</u> 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_____ _____ 결과 _____ _____.
제86조(자연감모의 정리) ① ~ ③ (생략)	제86조(자연감모의 정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④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물품에 자연감모율을 초과하는 감모가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진상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과 조치 결과를 명백히 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감사원에 지체 없이 <u>보고하여야 한다.</u>	_____ 알려야 한다. _____.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장학생의 정원 등) ① (생략)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매년 관할지역안의 제2조 각호의 공중보건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인원을 그 해 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u>보고하</u> <u>여야</u> 한다.	제3조(장학생의 정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통보해</u> <u>야</u>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법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6. 그 밖에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 의 청결을 위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 ----- ----- --.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0조(진흥계획의 평가 및 조치) ① (생략) ② 시·도지사 또는 특별시의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평가가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u>보고해야</u>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특별시의 시장이 <u>보고한</u> 사항 외에 추가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직접 평가할 수 있다. ③ (생략)	제60조(진흥계획의 평가 및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통보해야</u> ----- ----- <u>통보한</u> ----- ----- -----.
제65조(권한의 위탁) ①·② (생략)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역별 관광협회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매월 종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u>보고하여야</u> 한다. ④ ~ ⑦ (생략)	제65조(권한의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통보해야</u> -----. ④ ~ ⑦ (현행과 같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공동교통조사) ① (생략) ② 공동교통조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생략) 3. 공동교통조사 결과의 <u>보고</u>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 6. (생략)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교통조사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동교통조사의 추진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u>보고하여야</u> 한다. ④ (생략)	제11조(공동교통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2. (현행과 같음) 3. ----- <u>통보</u> ----- 4. ~ 6. (현행과 같음) ③ ----- ----- ----- ----- <u>통보해야</u> -----. ④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자활지원계획)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8조의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지역의 자활지원계획을 해마다 1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그 계획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u>보고하여야</u> 하고,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u>보고하여야</u> 한다.	제37조(자활지원계획) ① -----			

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 ·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과의 협 의를 거쳐 제1항의 자활지원계 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 -----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방체육 진흥 계획) ① · 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과 제2항에 따른 체육진흥 계 획과 그 추진 실적을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시장·군 수·구청장의 경우에는 시·도 지사)에게 <u>보고하여야</u> 한다.	제4조(지방체육 진흥 계획)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u>알려야</u> -----.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현황관리) ① (생략)	제24조(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현황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u>보고하여야</u>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② ----- ----- ----- ----- <u>통보해야</u> ----- ----- -----.	③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관리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 ----- ----- <u>통보</u> ----- ----- -----.			
제25조(기초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에 따른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이하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의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통합하여 구축·운영한다. 다	제25조(기초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 ----- ----- ----- ----- -----.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 29 -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조문대비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치료보호기관의 설치·지정 등) ①·② (생략)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u>보고하여야</u> 한다.	제3조(치료보호기관의 설치·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통보해야</u>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의3(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고시 등) ① ~ ③ (생략) ④ 시·도지사는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u>보고하여야</u> 한다. 1. ~ 5. (생략)	제3조의3(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고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u>통보해야</u> -----. 1. ~ 5. (현행과 같음)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도지사는 법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할 문화재가 있으면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진, 도면 및 녹음물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그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u>보고하여야</u> 한다.	제17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 ----- ----- ----- ----- ----- 자료를 문화재청장에게 <u>제출해야</u> 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재원) 법 제4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10퍼센트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제30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재원) ----- ----- ----- ----- <u>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u> ----- -----.
제31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용도) 법 제41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사업비를 말한다. <u><신 설></u>	제31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용도) ----- ----- ----- <u>다음 각 호의 사항을</u>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사업비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박물관·미술관 운영 위원회) ①·② (생략) ③운영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박물관·미술관이 소재한 지역의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서 그 박물관·미술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와 그 박물관·미술관의 장이 된다. ④ (생략)	제6조(박물관·미술관 운영 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예술계 인사 ----- ----- ----- ----- ----- ④ (현행과 같음)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사항) ①·② (생략)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2. (생략)	제13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사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60퍼센트 ----- ----- ----- 1. 2. (현행과 같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1조(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공유 재산 사용료등의 감면대상 사업 및 사용료등의 감면을 등 세부 사항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 ⑥ (생략)	제41조(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소관별 추진 계획의 집행 실적 보고) (생략) 제23조(공장 총허용량의 집행) ①·② (생략)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 총량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고, 공장건축량을 월별로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소관별 추진 계획의 집행 실적 제출) (현행과 같음) 제23조(공장 총허용량의 집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제출해야 한다. -----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6조(수질기준의 강화 등 조례의 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u>보고하여야</u> 한다. 조례로 정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46조(수질기준의 강화 등 조례의 통보) ----- ----- ----- <u>통보해야</u> ----- ----- -----.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략)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 여건 및 실정에 맞는 수산과학기술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u>보고하여야</u> 한다.	제3조(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u>알려야</u> -----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100 이하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80 이하	제11조(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 ----- ----- ----- ----- ----- <u>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u> ----- ----- -----. <삭 제> <삭 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된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의 변경 내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제3조(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받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u>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u>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받</u>

<u>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u> <u>하여야 한다.</u>	<u>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u> <u>을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u> <u>있다.</u>
---	--

<u>도교육감은 시행계획의 변경내</u> <u>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u>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u> <u>협의하여야 한다.</u>	<u>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u> <u>장과 협의하여 제출받은 사항에</u> <u>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시·도</u> <u>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u>
--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u>이 경우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은 시행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u> ③ (생 략)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된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u>이 경우 시·도지사 및 시·</u>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u>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받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u>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u>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u>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어업실태조사의 항목 및 방법) ①·② (생 략) ③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어업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u>보</u> <u>고하여야 한다.</u> ④ (생 략)	제2조(어업실태조사의 항목 및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통 <u>보해야</u> ----. ④ (현행과 같음)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1. ~ 4. (생략) 5. 그 밖에 지역 특성,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수수료) ① 법 제31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 또는 성분검사가 협회에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1. ~ 5. (생략) 6.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건당 7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수질검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7.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성분검사: 건당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성분검사에 드는 원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③ (생략)	제22조(수수료) ①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7.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③ (현행과 같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① (생략)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u>보고</u> 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발생일부터 사고수습 종료일까지 매일 1일 활동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u>보고하여야</u> 하며, 사고수습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u>종합 보고를 하여야</u> 한다.	제9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통보</u> 해야 ----. ③----- ----- ----- ----- ----- <u>통보</u> 해야 ----. ----- <u>통보</u> 해야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수립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하 “빛환경 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략) 5. 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③ (생략)	제5조(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①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③ (현행과 같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정수금의 지원을 위한 평가 기준 및 지원절차 등) ① 재건축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재건축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귀속되는 기금 또는 회계와 동 재원의 운용계획을 부과종료시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u>보고하여야</u> 한다.	제3조(정수금의 지원을 위한 평가 기준 및 지원절차 등) ① ----- ----- ----- ----- ----- ----- ----- <u>통보해야</u> -----.
② ~ ⑨ (생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8조(보고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이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으로서 법의 적용을 받게 되거나 또는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u>보고하여야</u> 한다.	제78조(<u>통보 등</u>) ① ----- ----- ----- ----- ----- ----- <u>통보해야</u>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u>보고하여야</u> 한다.	② ----- ----- ----- ----- ----- ----- <u>통보해야</u>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③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③ ----- ----- <u>제2항에 따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u>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0조(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으로서 당초의 이행기(당초의 이행기 후에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최초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도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고 이행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과 이에 관한 연체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제130조(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채권과 이에 관한 연체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으로서 당초의 이행기(당초의 이행기 후에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최초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도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고 이행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수련지구 내 필수시설 및 금지시설) ① (생략)	제29조(수련지구 내 필수시설 및 금지시설)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수련 지구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수련지구조성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로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조례에서 정하는 것	8. 그 밖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것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① ~ ③ (생략)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확정한 경우에는 이를 시·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고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통보해야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폐금속광산지역에 관한 특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u>관할지역중</u> 「광산안전법」 제18조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의 책임이 소멸된 금속광산지역의 현황을 파악하여 시·도지사 및 환경부장관에게 <u>보고하여야</u> 한다.	제17조(폐금속광산지역에 관한 특별) ----- ----- ----- <u>관할지역 중</u> ----- ----- ----- ----- ----- <u>제출해야</u>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 ① (생략) ②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율은 <u>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u>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천분의 10을 <u>하한</u> 으로 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⑤ (생략)	제3조(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u>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u>고려하여</u> -----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조의2(대부료의 감액 등)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감액하여 대부하는 경우 연간 감액비율은 <u>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u> <단서 신설>	제3조의2(대부료의 감액 등) ① ----- ----- ----- <u>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 교육감은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u>

	<u>「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u> 의 심의를 거쳐 <u>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연간 감액비율을</u> <u>따로 정할 수 있다.</u>		<u>1.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800</u>	
<u>1.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제3조제2항에 따른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500</u>	<u><삭 제></u>		<u>2.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500</u>	
<u>2.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제3조제2항에 따른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300</u>	<u><삭 제></u>		<u>③ (생 략)</u>	<u>③ (현행과 같음)</u>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 교육감은 대부분 받은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연간 감액비율을 정할 수 있다.</u>	<u><삭 제></u>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조사·측정활동) ①·② (생 략)	제37조(조사·측정활동) ①·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① ~ ④ (생 략)	제13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③ 해역관리청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측정활동을 매년 실시하고, 시·도지사가 해역관리청인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u>보고하여야</u> 한다.	③ ----- ----- ----- ----- ----- 통보해야 -----.	⑤ 제4항에 따른 포상금은 <u>100만원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u> 을 지급한다.	⑤ ----- <u>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u>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 락 처	(044) 203 - 664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	
연 락 처	(044) 205 - 1484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 락 처	(044) 203 - 2258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 락 처	(044) 202 - 2276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 락 처	(044) 201 - 6394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	
연 락 처	(02) 2100 - 6093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 락 처	(044) 201 - 3228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 락 처	(044) 200 - 5164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연 락 처	(042) 481 - 4789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연 락 처	(042) 481 - 4283